

1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 원,%)

재정운영 결과		'10년도 (A)	'09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 평균	자치단체 평균	동종단체 평균
① 세입·세출결산	세입	474,383	506,559	△32,176	△6.4%	878,516	797,739	524,450
	세출	415,665	431,408	△15,743	△3.6%	764,346	649,157	429,149
② -1 지방채무(원금기준)		2,507	21,067	△18,560	△88.1%	133,888	90,594	46,281
② -2 일시차입금(원금기준)		-	-	-	-	-	-	-
③ 채권현재액(원금기준)		7,652	7,085	567	8.0%	79,028	9,331	10,204
④ 기금운용현황		4,890	4,565	325	7.1%	39,131	29,971	9,145
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2,016,801	1,868,617	148,184	7.9%	2,450,443	2,447,825	878,178
	물품	3,895	3,642	253	6.9%	7,876	7,172	4,019
⑥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2,253,143	2,134,611	118,532	5.6%	3,890,885	4,291,228	2,253,944
	부채총계	18,049	44,339	△26,290	△59.3%	171,123	134,116	67,597
	수익총계	394,525	336,759	57,766	17.2%	687,667	582,059	400,681
	비용총계	252,288	260,813	△8,525	△3.3%	596,187	465,457	303,106
⑦ 통합재정수지(예산편기준)		△3,460	△1,168	△2,292	196.2%	△8,901	1,362	1,951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자치단체평균은 시군구 자치단체 수로 나눈 평균을 의미함
- ▶ 동종단체 평균은 시군구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을 의미함
- ▶ 통합재정정보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산출한 것임
- ▶ 금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사사오입으로 기입, 비율 등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한자리만 표시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10년도 (A)	'09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	전국 평균	자치단체 평균	동종단체 평균
①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③-1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50,084	49,511	573	1.2%	66,996	68,252	53,500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91	450	△59	△13.1%	673	640	444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96	88	8	9.1%	177	181	140
	③-4 행사·축제 경비 집행현황	3,039	3,217	△178	△5.5%	3,722	5,605	4,807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18,961	17,573	1,388	7.9%	29,485	36,567	21,897
	③-6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2,473	2,430	43	1.8%	4,191	4,634	2,925
	③-7 포상금 집행현황	1,071	1,089	△18	△1.7%	2,266	2,350	1,424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23,511	28,964	△5,453	△18.8%	11,484	15,308	13,758
	③-9 연말지출 비율	13,818	19,048	△5,230	△27.5%	12,700	15,712	15,230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4,590	4,754	△164	△3.4%	54,571	22,573	6,087
	③-11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887	886	1	0.1%	1,534	1,616	1,055
	③-1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자치단체평균은 시군구 자치단체 수로 나눈 평균을 의미함
- ▶ 동종단체 평균은 시군구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을 의미함
- ▶ 금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사사오입으로 기입, 비율 등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한자리만 표시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동종 자치단체 유형 구분(2010년 기준)

유형	자치단체명
특별시·광역시(7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도(9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A (13개)	경기용인시, 경기성남시, 경기고양시, 경기수원시, 경기안산시, 경기부천시, 경기안양시, 충남천안시, 경남남양주시, 경남창원시, 충북청주시, 전북전주시, 경북포항시
시B (20개)	경기화성시, 경기파주시, 경기시흥시, 경남김해시, 경기의정부시, 경기평택시, 경기김포시, 경기오산시, 충남아산시, 경기광주시, 경기과천시, 경북구미시, 경기광명시, 경기군포시, 경기양주시, 경남양산시, 경기구리시, 경기하남시, 경남거제시, 강원원주시
시C (19개)	경기안성시, 경기의왕시, 경기이천시, 전남여수시, 경북경산시, 경남진주시, 전남광양시, 강원춘천시, 경기포천시, 전남목포시, 전북익산시, 경북경주시, 전북군산시, 경기동두천시, 충남서산시, 충남계룡시, 전남순천시, 충북충주시, 강원강릉시
시D (21개)	경남통영시, 강원속초시, 충북제천시, 경남사천시, 충남공주시, 경북안동시, 충남논산시, 경북김천시, 강원동해시, 충남보령시, 경남밀양시, 경북영주시, 경북영천시, 전북정읍시, 전남나주시, 강원태백시, 경북상주시, 전북김제시, 전북남원시, 경북문경시, 강원삼척시
군A (21개)	울산울주군, 대구달성군, 충북청원군, 경기여주군, 경북칠곡군, 충남당진군, 부산기장군, 경기양평군, 충북음성군, 충남연기군, 경기가평군, 충북진천군, 경남함안군, 인천옹진군, 전북완주군, 인천강화군, 충남태안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 충북증평군, 강원홍천군
군B (21개)	경기연천군, 강원평창군, 전남영암군, 전남무안군, 전남화순군, 충남금산군, 경남고성군,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 경남하동군, 경북고령군, 충북옥천군, 강원양양군, 경남거창군, 강원인제군, 강원정선군, 경남창녕군, 강원철원군, 전남영광군, 충남서천군, 전남담양군
군C (22개)	경북울진군, 경남합천군, 경북성주군, 전남해남군, 경북울릉군, 강원화천군, 충북영동군, 강원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함양군, 경남의령군, 강원양구군, 전북부안군, 전남장성군, 강원영월군, 경북청도군, 전북고창군, 경남산청군, 전남완도군, 경북영덕군, 전남고흥군, 전남신안군
군D (22개)	충북괴산군, 경북예천군, 충북보은군, 전북순창군, 전남보성군, 전남함평군, 충북단양군, 경북의성군, 충남청양군, 전남강진군, 경북군위군, 전북무주군, 전남곡성군, 전남진도군, 전남장흥군, 전북임실군, 전북진안군, 전남구례군, 경북청송군, 전북장수군, 경북봉화군, 경북영양군
자치구A (12개)	서울중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서울종로구, 서울송파구, 서울영등포구, 서울용산구, 서울성동구, 서울양천구, 서울강동구, 서울마포구, 서울광진구
자치구B (13개)	서울동작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서대문구, 서울구로구, 서울금천구, 서울성북구, 서울도봉구, 서울은평구, 서울강북구, 서울관악구, 서울강서구, 서울중랑구, 서울노원구
자치구C (22개)	인천중구, 울산남구, 인천남동구, 울산동구, 대전유성구, 부산강서구, 인천서구, 울산북구, 대구수성구, 대구중구, 인천동구, 인천연수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중구, 대구달서구, 부산진구, 대전서구, 부산동래구, 부산연제구, 광주서구, 인천부평구, 부산사상구
자치구D (22개)	인천남구, 인천계양구, 부산수영구, 부산남구, 부산금정구, 광주광산구, 대구서구, 대구북구, 부산사하구, 대전중구, 울산중구, 대전대덕구, 대구동구, 대구남구, 부산동구, 광주동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대전동구, 부산영도구, 부산북구, 부산서구

▶ **삼척시 유형구분 : 시D(21개 자치단체)**

②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2010년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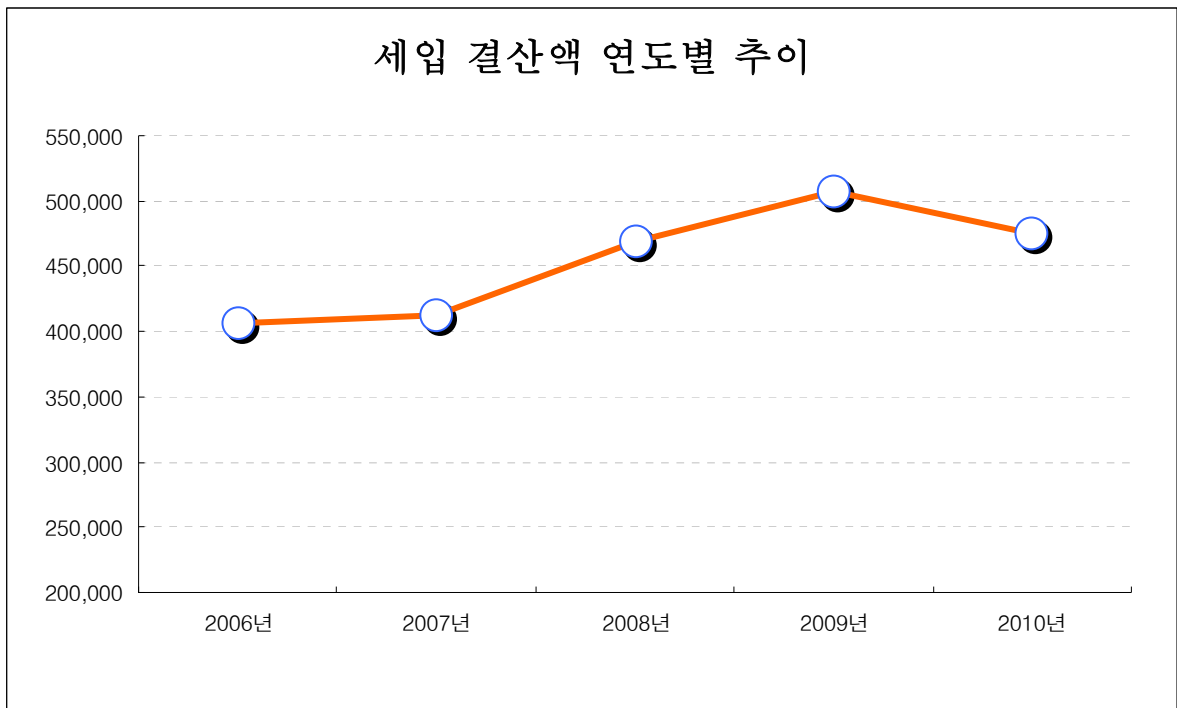
회계별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B/A	미 수 납 액		
						계 (A-B)	불 결 손 액	미 수 납 액 이 월 액
합 계		466,219	480,571	474,383	98.7	6,188	536	5,652
일 반 회 계	소 계	446,546	457,359	452,009	98.8	5,350	529	4,821
	지방세	18,500	22,717	20,456	90.0	2,261	374	1,887
	세외수입	93,501	97,623	94,534	96.8	3,089	155	2,934
	지방교부세	186,637	188,709	188,709	100	-	-	-
	증액교부금	-	-	-	-	-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600	5,980	5,980	100	-	-	-
	보조금	142,308	142,330	142,330	100	-	-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특별회계		19,673	23,212	22,374	96.4	838	7	831
공 기 업	소 계	13,774	16,223	15,917	98.1	306	3	30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774	16,223	15,917	98.1	306	3	303
기 타	소 계	5,899	6,989	6,457	92.4	532	4	528
	주택사업특별회계	146	242	241	99.6	1	-	1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354	1,474	1,398	94.8	76	-	76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993	1,037	1,001	96.5	36	-	3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63	163	163	100	-	-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25	228	226	99.1	2	-	2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19	668	304	45.5	364	-	36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22	3,106	3,057	98.4	49	4	45
	기반시설특별회계	77	71	67	94.4	4	-	4

▶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총괄편 내용

▶ 실제수납액의 %는 실제수납액/징수결정액의 비율임

☞ 세입결산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입결산	407,013	411,701	469,437	506,559	474,383



- ▶ **세입(歲入)**이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지방세) 수입이며,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사용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 총괄편' 실제 수납액으로 작성하였으며,
- 세입결산액은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등) 으로 구분됩니다.

나. 세출결산(2010년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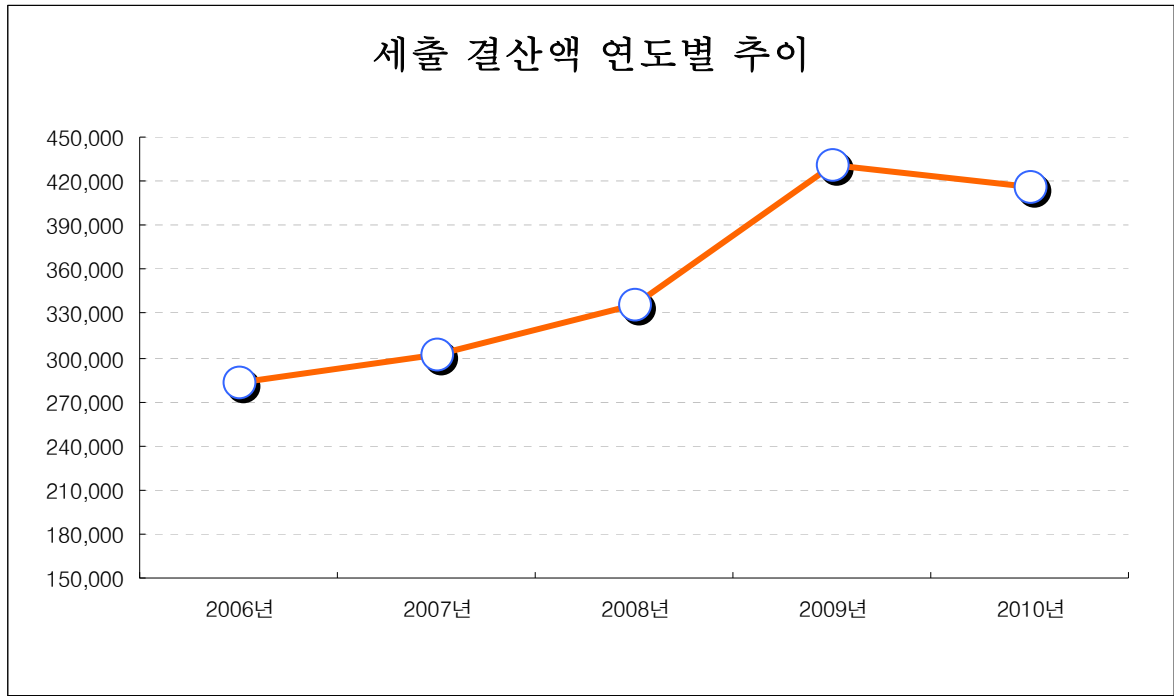
회계별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			%	
합 계		466,219	427,663	415,665	89.2	35,540	15,014	3.2	
일 반 회 계	소 계	446,546	412,313	400,315	89.6	34,812	11,419	2.6	
	일 반 공 공 행 정	19,364	18,185	18,102	93.5	181	1,081	5.6	
	공 공 질 서 및 안 전	21,780	20,478	19,851	91.1	1,726	203	0.9	
	교 육	6,205	5,944	5,944	95.8	-	261	4.2	
	문 화 및 관 광	55,474	52,406	49,775	89.7	4,672	1,027	1.9	
	환 경 보 호	22,140	21,619	20,778	93.8	1,123	239	1.1	
	사 회 복 지	55,813	53,905	53,905	96.6	286	1,622	2.9	
	보 건	9,623	8,450	8,450	87.8	836	337	3.5	
	농 립 해 양 수 산	63,367	58,207	57,450	90.7	4,097	1,820	2.9	
	산 업 중 소 기 업	49,419	46,863	45,838	92.8	2,310	1,271	2.6	
	수 송 및 교 통	21,184	20,708	20,256	95.6	745	183	0.9	
	국 토 및 지 역 개 발	66,924	52,990	47,408	70.8	18,836	680	1.0	
	과 학 기 술	-	-	-	-	-	-	-	-
	예 비 비	573	-	-	-	-	573	100.00	
	기 타	54,680	52,558	52,558	96.1	-	2,122	3.9	
특 별 회 계		19,673	15,350	15,350	78.0	728	3,595	18.3	
공 기 업	소 계	13,774	10,894	10,894	79.1	728	2,152	15.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774	10,894	10,894	79.1	728	2,152	15.6	
기 타	소 계	5,899	4,456	4,456	75.5	-	1,443	24.5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46	11	11	7.5	-	135	92.5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354	1,280	1,280	94.5	-	74	5.5	
	국민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993	9	9	0.9	-	984	99.1	
	발전소주변지역자원사업 특별회계	163	163	163	100	-	-	-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25	200	200	88.9	-	25	11.1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19	261	261	81.8	-	58	18.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22	2,475	2,475	94.4	-	147	5.6	
기 반 시 설 특 별 회 계	77	57	57	74.0	-	20	26.0		

▶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출총괄편 내용

▶ 지출액의 %는 지출액/예산현액, 집행잔액의 %는 집행잔액/예산현액의 비율임

☞ 세출결산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	283,572	301,476	336,135	431,408	415,665



- ▶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 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채권 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출결산 총괄편' 지출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행정서비스 기대수준향상과 주민복지시설 구축 필요성 발생, 그간 추진해 온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신성장산업의 신규발굴 등에 지출 되었습니다.

②-1 지방채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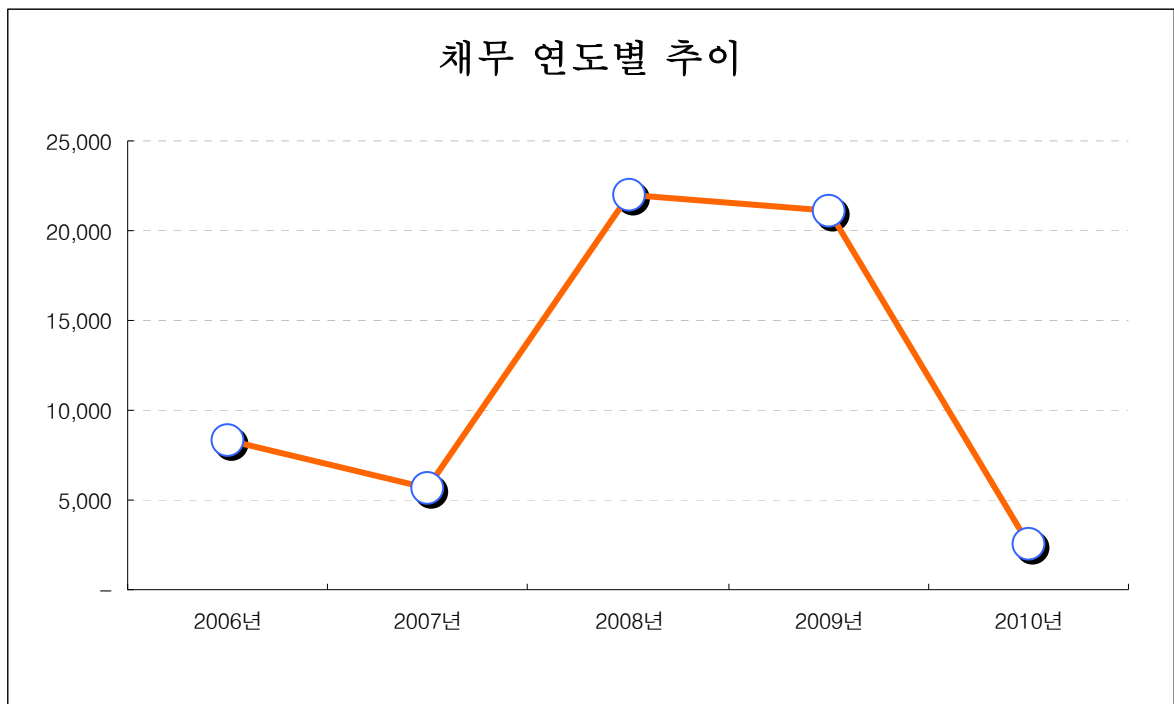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1,067	△18,560	-	18,560	2,507	72,046	35천원
일반회계	20,500	△18,400	-	18,400	2,100	72,046	29천원
특별회계	소 계	567	△160	-	160	72,046	6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67	△160	-	160	72,046	6천원

- ▶ 2010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임(원금기준)
- ▶ 인구수는 2010.12.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 ▶ 2008년도에는 결산작성기준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을 채무에 추가포함 작성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세입세출외 보관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변경됨.

☞ 채무현황 연도별 비교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무현황	8,286	5,677	22,043	21,067	2,507



▶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합니다.

- 2008년도 채무액을 살펴보면,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해 2010년도에 준공예정이었으나 2009년 조기준공 및 개교를 위해 부득이 채무부담한 16,0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채무액은 4,211백만원이었으며,
- 2009년도에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폐광지역 대학캠퍼스 조성을 통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요사업비 18,000백만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 상수도시설확장, 수해피해복구 등을 위하여 발행한 채무액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4건 20,500백만원, 특별회계 5건 567백만원으로 총 9건 21,067백만원 이었으나,
- 2010년도에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 차입금 등 18,560백만원 상환하여 일반회계 2건 2,100백만원, 특별회계 4건 407백만원 총 6건 2,507백만원입니다

②-2 일시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 채권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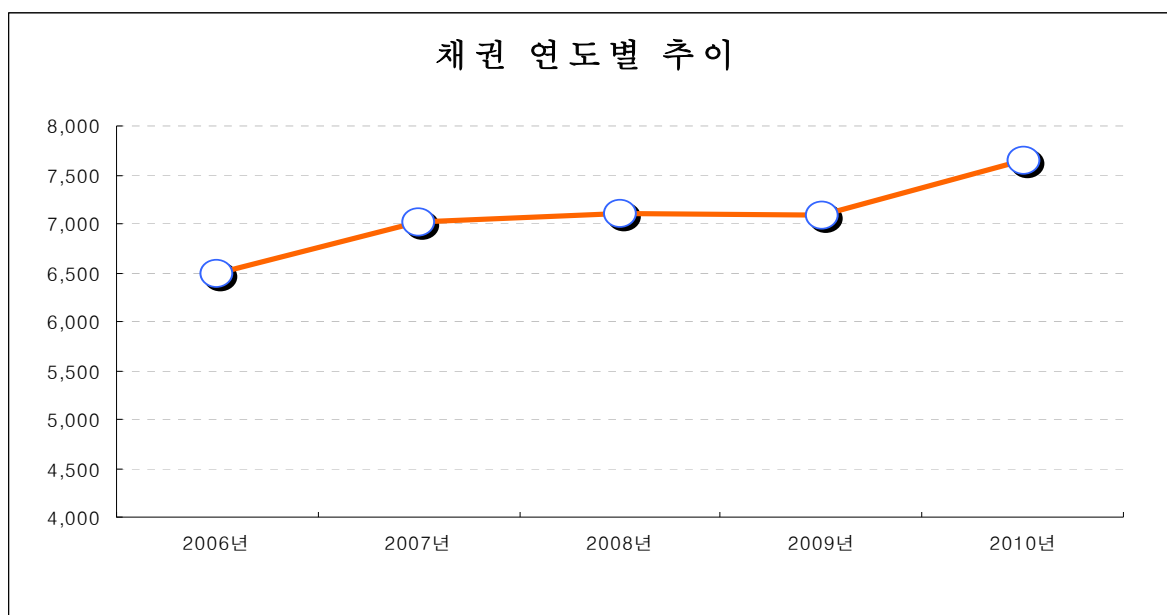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085	567	1,284	717	7,652	
일 반 회 계	6,482	△27	91	118	6,455	
특 별 회 계	소 계	603	△21	406	427	582
	주택사업특별회계	178	△51	192	243	127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	76	136	60	77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424	△46	78	124	378
기 금 회 계	소 계	-	615	787	172	615
	농어업소득기금	-	615	787	172	615

▶ 201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총괄현황임(원금기준).

☞ 채권현황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권현황	6,484	7,026	7,104	7,085	7,652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 (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업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됩니다.

● 일반회계 채권은 지방세체납액 및 임대료, 사용료수입, 재산매각 등 세외수입 체납액과 학자금대부등의 융자금채권이 속합니다.

특별회계 채권은 농업인 소득증가 및 저소득 주민전세자금 또는 생업자금 등 주민복리를 위한 융자금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④ 기금운용 현황(8개 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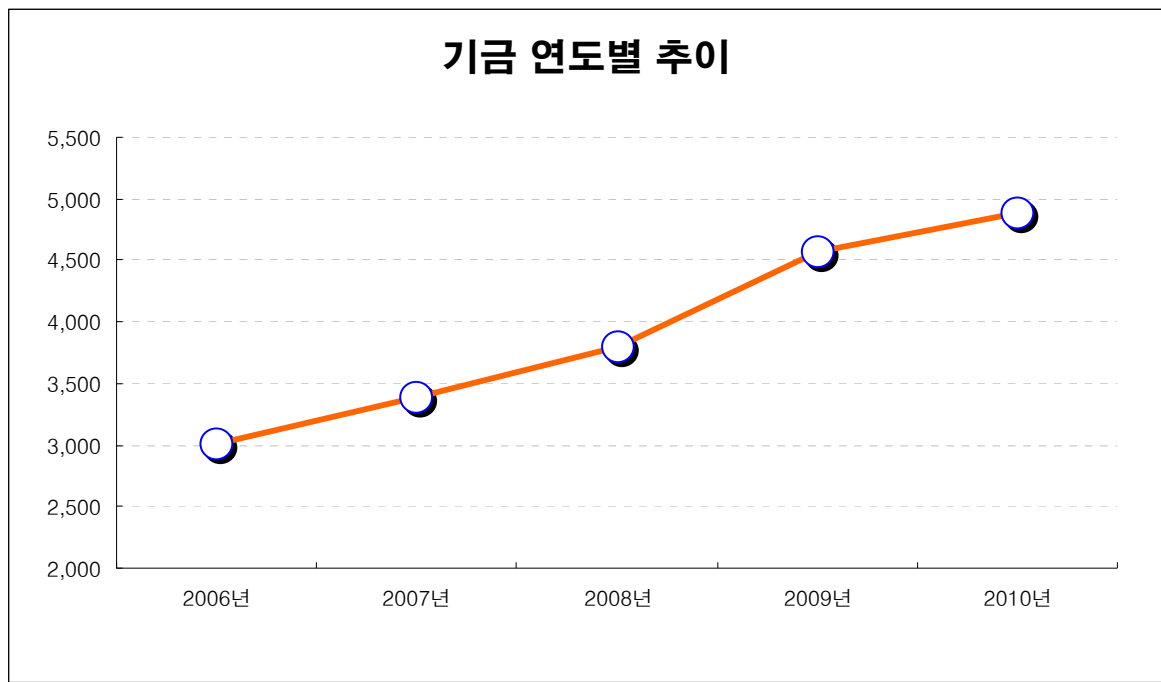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종류별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4,565	325	742	417	4,89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97	56	70	14	453
노 인 복 지 기 금		533	6	42	36	539
장 애 인 복 지 기 금		478	30	47	17	508
재 난 관 리 기 금		1,675	61	247	186	1,736
식 품 진 흥 기 금		85	13	13	-	98
여 성 발 전 기 금		739	83	121	38	822
농 어 업 소 득 기 금		658	63	189	126	721
옥 외 광고 정비 기금		-	13	13	-	13

▶ 2010년 세입·세출 결산서의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임.

☞ 기금운용현황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금운용현황	3,004	3,390	3,796	4,565	4,890



▶ **기금(基金)**이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목적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임.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으로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목적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며, 그 설치목적과 존재형태가 다양함.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0년도 말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8개 기금이며, 2010년도에 기금조성액이 증가한 이유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신설되었고 시 출연금 및 ,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운용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분	'09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1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3,454,921	1,868,617	1,293,614	156,495	751,578	8,311	33,996,957	2,016,801	
토지	33,257,400	195,081	1,156,486	25,991	749,337	7,746	33,664,549	213,326	
건물	197,251	61,700	136,983	127,718	2,241	505	331,993	188,913	
입목	18	39,038	-	-	-	-	18	39,038	
공작물	52	1,451,885	-	2,691	-	-	52	1,454,576	
기계기구	14	2,837	-	-	-	-	14	2,837	
선박	-	406	-	-	-	-	-	406	
항공기	-	-	-	-	-	-	-	-	
지적재산권	-	-	-	-	-	-	-	-	
유가증권 (주식, 출자)	-	117,527	-	-	-	-	-	117,527	
용익물권	186	143	145	95	-	60	331	178	
회원권	-	-	-	-	-	-	-	-	

- ▶ 201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임.
- ▶ 2009년도 결산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회계결산 방식 변경
⇒ 공작물, 기계기구, 유가증권, 용익물권등을 공유재산 범위에 포함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 우리시의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토지 등 1,4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물 품

(단위 : 백만원/개)

구 분	'0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0년도 현재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82	3,642	83	522	57	269	408	3,895	
구 매	437	4,518	57	383	-	-	494	4,901	
관리전환	△29	△561	26	139	40	176	△43	△598	
기 타	△26	△315	-	-	17	93	△43	△408	

▶ 201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임.

- 우리시의 물품은 전년도 기준대비 25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년마다 정기적으로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전년도 및 당해 회계연도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10. 12. 31 기준)

- 1) 결산총평
- 2) 재무제표
- 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4) 필수 보충정보
- 5) 부속명세서

☞ “별책” 참조

⑦ 통합재정정보(예산편)

(단위 : 백만원,최종예산기준)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 규모	통합재정 수지(1)	통합재정 수지(2)
	세입	지출	용자 회수 (A)	용자 지출 (B)	순용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 계	384,661	382,802	216	19,484	19,268	13,949	402,070	△17,409	△3,460
일 반 회 계	376,164	364,980	-	18,200	18,200	12,462	383,180	△7,016	5,446
기타특별회계	1,390	4,921	51	934	883	1,487	5,804	△4,414	△2,927
공기업특별회계	6,944	12,496	-	50	50	-	12,546	△5,602	△5,602
기 금	163	405	165	300	135	-	540	△377	△377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1) : 세입-(지출+순용자)
- ▶ 통합재정수지(2) : 세입-(지출+순용자)+순세계잉여금
- ▶ 순세계잉여금이란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함.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세입 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합니다.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 계상된 부분의 공제 없이 단순 합제한 세입·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분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우리시는 2010년도 최종예산 통합재정수지 규모는 402,070백만원으로, 이는 순수재정지출 402,286백만원에서 순·용자수입 216백만원을 뺀 수치임

● 통합재정수지는 17,409백만원의 적자로 이는 순수재정수입에서 순수재정지출을 뺀 수치임.
☞ 순수재정수입 384,877백만원, 순수재정지출 402,286백만원

통합재정정보 (예산편)

<2010년도 최종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1. 세입	384,661	376,164	1,390	6,944	163
(순세계잉여금 포함시)	398,610	388,626	2,877	6,944	163
1.1 경상수입	43,146	37,672	1,038	4,273	163
1.2 이전수입	337,569	334,546	352	2,671	-
1.3 자본수입	3,946	3,946	-	-	-
2. 지출 및 순융자	402,070	383,180	5,804	12,546	540
2.1 경상지출	169,702	161,086	3,758	4,683	175
2.2 자본지출	213,100	203,894	1,163	7,813	230
2.3 순융자	19,268	18,200	883	50	135
통합재정규모	402,070	383,180	5,804	12,546	540
통합재정수지	△17,409	△7,016	△4,414	△5,602	△377
(순세계잉여금 포함시)	△3,460	5,446	△2,927	△5,602	△377
3. 보전재원	148,520	135,119	4,762	8,262	377
3.1 순보전	17,409	15,990	1,487	△110	42
3.2 회계별 거래	-	△8,973	2,926	5,712	335
3.3 자치단체간 거래	131,111	128,102	349	2,660	-
※ 순세계잉여금	13,949	12,462	1,487	-	-

▶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 포함하였을 경우 재정수지 △3,460백만원

-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재정수지 △17,409백만원